
Policy and Law Report _Vol.90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 6.14 ~ 6.20) -

June 21, 2021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산업통상 자원부	• <u>관계부처 합동으로 역대 최대규모 예산 1.3조원의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 발표</u> 정부는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년)」을 심의·의결함. 이번 기본계획은 산업부, 과기정통부 등 18개 부처와 50여명의 민간 표준전문가가 참여하여 분야별로 추진 과제를 발굴함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거쳐, ①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 ②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 ③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 ④ 혁신 주도형 표준화체계 확립 등 4대 전략 12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함	2021-06-14											
	• <u>한-아세안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 공고</u>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한-아세안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아세안 산·학·연과 국내기업 간의 국제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세안과의 기술협력 수요 조사(‘21.1.20일~2.17일, 국내 산·학·연 대상)를 통해 도출된 12개 기술품목을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함 < 12개 기술품목 분야 > <table> <tr> <td>① 전기이륜차</td> <td>⑦ 산업용 초순수 장치</td> </tr> <tr> <td>② 지능형 엘이디(LED) 도로조명</td> <td>⑧ 저온 지열발전 플랜트</td> </tr> <tr> <td>③ 자동차 브레이크패드 생산설비</td> <td>⑨ 빅데이터 기반 섬유제품 품질관리</td> </tr> <tr> <td>④ 건물 에너지효율 향상</td> <td>⑩ 농기계 개량</td> </tr> <tr> <td>⑤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축산</td> <td>⑪ 비철금속 회수 및 주조생산</td> </tr> <tr> <td>⑥ 전기자동차(9인승 이하)</td> <td>⑫ 전기버스(20인승 이상)</td> </tr> </table> 선정된 기업에게는 3년간 최대 10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며, 해당기업은 아세안 산·학·연과의 공동연구, 기술이전 등을 통해 한-아세안 상호 호혜적인 산업기술 협력을 추진할 예정임	① 전기이륜차	⑦ 산업용 초순수 장치	② 지능형 엘이디(LED) 도로조명	⑧ 저온 지열발전 플랜트	③ 자동차 브레이크패드 생산설비	⑨ 빅데이터 기반 섬유제품 품질관리	④ 건물 에너지효율 향상	⑩ 농기계 개량	⑤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축산	⑪ 비철금속 회수 및 주조생산	⑥ 전기자동차(9인승 이하)	⑫ 전기버스(20인승 이상)
① 전기이륜차	⑦ 산업용 초순수 장치												
② 지능형 엘이디(LED) 도로조명	⑧ 저온 지열발전 플랜트												
③ 자동차 브레이크패드 생산설비	⑨ 빅데이터 기반 섬유제품 품질관리												
④ 건물 에너지효율 향상	⑩ 농기계 개량												
⑤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축산	⑪ 비철금속 회수 및 주조생산												
⑥ 전기자동차(9인승 이하)	⑫ 전기버스(20인승 이상)												

부처	내용	일시
국토교통부	• 자율차·스마트시티 등 유망분야 창업기획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분야 유망 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창업기획(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새싹기업 발굴과 육성에 나설 계획임 ‘국토교통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선정을 완료((씨엔티테크(주)), 5.14)하고, 국토교통 특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넥스트(NEXT) 챌린지’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6.15(화)~28(월))한다고 발표함 * NEXT 챌린지: Network, Experts, eXperience, Training and Challenge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창업기획(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은 교육·멘토링, 투자유치 지원, 마케팅 역량강화, 네트워킹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국토교통 10대 유망 산업* 분야의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2단계 평가를 통해 5개 스타트업을 선정할 계획임 * <10대 유망 산업> ① 스마트시티, ② 자율주행차, ③ 드론, ④ 스마트건설, ⑤ 녹색건축, ⑥ 스마트물류, ⑦ 공간정보, ⑧ 철도부품, ⑨ 자동차 애프터마켓, ⑩ 프롭테크 모집분야,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 자세한 스타트업 모집공고에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www.kaia.re.kr/알림마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발표평가 등을 거쳐 7월 중 최종 선정, 발표함 ※ 문의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599-8686(3, 5), 씨엔티테크(주) ☎070-4295-1330 / startup.kaia2021@gmail.com	2021-06-15
식품의약품안전처	•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12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신산업현장 애로 규제혁신 방안에서 바이오헬스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9가지 과제를 추진하기로 함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그간 추진해 온 신산업 5대 핵심 분야*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발굴 해소하기 위해 마련됨 * DNA 생태계 산업, 비대면 산업, 기반산업 스마트화, 그린산업, 바이오 의료산업 이 중 바이오헬스분야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인허가 과정에서 안전 관련성은 적으면서 사업자에게 부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로 함 주요 추진과제는 ①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판매업 신고 면제, ② 화장품(고형비누 등) 표시기재 의무 개선, ③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완화, ④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조합제품의 제조위탁자 범위 확대 등이 있음	2021-06-17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기획재정부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환전·송금 등 외국환거래와 관련한 산업이 확대되고 새로운 사업자들의 유입 수요가 증가하면서 최근 정부는 환전·송금관련 사무의 위탁범위 확대, 무인기기 등을 통한 대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외환서비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가 증가하고 지급수단이 다양해짐에 따라 외환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외환서비스 관련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고객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환거래 관련 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감독하도록 하고 수탁기관의 법률 위반 시 수탁기관을 위탁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간주하여 위탁기관의 책임전가를 방지하는 한편, 법령 위반 시 제재수단의 위임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20조)	2021-06-15
산업통상자원부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맹사업은 유행에 민감한 산업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상황과 가맹사업 진출 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정기조사가 3년마다 시행되어 가맹업자 및 가맹점 사업자가 정확한 데이터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국내 가맹사업 시장의 포화 및 과다경쟁으로 해외진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이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실태조사의 주기를 2년으로 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16조의2 신설)	2021-06-15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산업통상 자원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경제자유구역은 그간 입주기업 수 등 양적으로는 성장하였으나 미·중분쟁, 코로나19 등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자국 산업보호의 중요성이 고조되고 신산업 선점 경쟁이 점차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경제자유구역이 이른바 ‘신산업 전진기지’ 비전을 구현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 전략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각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활용한 핵심전략산업 중심으로 발전기반을 강화하고, 첨단·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도입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목적에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1조) ② “경제자유구역” 정의에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추가하고,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제2조) ③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3조의3제3호) ④ 시·도지사는 5년마다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3조의4 신설) ⑤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전용용지 공급 대상을 외국인투자 기업에서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까지 확대함(제6조제1항제13호) ⑥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도 변경된 것으로 간주함(제7조의6제1항제11호 신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7 신설) ⑧ 개발사업자가 조성토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을 추가함(제9조의7) ⑨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입지·자금 등의 투자인센티브 제공 대상을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에서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투자 기업까지 확대하고,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16조 및 제17조) ⑩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25조제1호의3 신설) ⑪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 수립, 핵심전략산업 육성, 신산업 규제혁신 과제 발굴, 신산업 및 기업의 육성·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함(제27조의4 신설)	2021-06-15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산업통상 자원부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이 입증되더라도 규제 특례 유효기간 내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이에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규제특례 사업에 대해서는 법령 정비 요청제 및 임시허가 전환 근거를 마련하여 중단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제도는 주관부처별로 각각 제도를 운영 중인 점을 감안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에 한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간사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2021-06-15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기존에 지역경제의 핵심 거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계획입지 내 일부 지역 및 기업수요지에 첨단산업을 적극 육성·유치할 수 있도록 입지 및 기반시설 지원과, 규제개선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국내외 첨단기업의 신속한 입주를 유도하고 기존 계획입지를 활성화하여 대한민국을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 만들기 위해 「첨단투자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자 함	2021-06-15
환경부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산업간 융합 및 연계를 새로운 산업발전 동력으로 강조하고 있는 4차산업 시대 도래에 따라 미래 핵심산업인 녹색산업에 대하여도 연관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획기적인 기술을 창출하여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녹색산업 및 연관 산업과 관련하여 특화할 수 있는 지역을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조성하고,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해서 연구개발, 실증실험 및 사업화 촉진 등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여 관련 기술 및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021-06-15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금융 위원회	• 「<u>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u>」 대주주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신용공여 허용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해외현지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다른 해외현지법인에 대해서도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의 신용공여를 허용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한편,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중복청약 사실을 확인하고도 청약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행위를 투자매매업자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추가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최저자기자본 유지 여부를 회계연도 기준에서 월 기준으로 점검하도록 하며,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의 발행한도를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21-06-18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행정 안전부	• 「<u>공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법률안</u>」 개별법 상 공유재산특례 과다로 방만운용 및 수익기관간 형평성 문제 등이 있어, 체계적 특례관리 및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법률안의 제정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등 규정(안 제1조~제6조), ② 양여의 용도제한(안 제7조), ③ 공유재산특례의 신설등에 관한 심사 및 점검·평가(안 제8조, 제9조), ④ 공유재산특례 계획의 수립 및 특례지출보고서의 작성(안 제10조, 제11조) 등이 있음 ※ 의견 제시기간 : 6/15(화)~7/26(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로 제출	2021-06-15
환경부	• 「<u>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u>」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내 살생물물질의 승인 또는 승인유예 여부 사전 확인,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기준 추가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누적된 위반사항의 가중처분과 관련한 적용차수 산정기준 개선 등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내 살생물물질이 포함된 경우, 해당 제품 확인 신청시 살생물물질이 승인 또는 승인유예 받은 물질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의무화(규칙 제5조제1항 및 별지 제1호 개정), ② 살생물제품의 운반시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안전용기 및 포장기준 강화(규칙 제19조 개정), ③ 제품의 위해 수준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표시·광고시 금지 문구를 환경부장관이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개정(규칙 제34조제1항 개정), ④ 제품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 광고시 제품의 신고 및 승인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개정(규칙 제34조제2항 개정) 등이 있음 ※ 의견 제시기간 : 6/15(화)~7/26(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로 제출	2021-06-15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금융 위원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제 17299호)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조문 정비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주요 내용은 ① 의심거래 보고의무 관련 사항을 명확화(안 제7조), ② 금융회사등의 조치 명확화(안 제9조), ③ 고객확인사항을 명확화(안 제10조의5), ④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안 제10조의20) 등이 있음 ※ 의견 제시기간 : 6/17(목)~7/27(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로 제출	2021-06-17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법제사법 위원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7인)」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해체 중이던 건물이 붕괴하여 일반시민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은 중대재해가 발생함. 이는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관리 및 유해위험 방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대재해사고로 이어진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만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의무 확보의무발생 및 위반 시 처벌의 이유로 규정하고 있어, 건물해체 등 건설공사 현장업무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 조치 미비로 발생한 일반시민의 재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의무를 묻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의 범주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포함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중대시민재해”의 범주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포함함(안 제2조제3호) ②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대상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를 포함함(안 제9조제2항)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한 경우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건설공사를 추가함(안 제9조제3항)	2021-06-17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기획재정 위원회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천연가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전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여 수소를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 기반의 시장을 창출하려고 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수소가격의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거의 전량을 수입하고 있는 천연가스 가격의 세제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여 수소 생산 원가를 낮추고 대체관계에 있는 연료들과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소생산용 원료로 사용하는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세함으로써 수소경제 활성화 및 이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4호 신설)	2021-06-14
정무 위원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입법례와 같이 법원은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 관련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및 재판상 증거가 되는 감리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2021-06-17
과학기술 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1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하나로써 추가하고, 국가기관 등이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 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공공기관 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20조)	2021-06-11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과학기술 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등 10 인)」 구독서비스란 이용자가 일정 기간 요금을 지불하고 원하는 콘텐츠를 정기·비정기 또는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서비스로서 최근 구독서비스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품목과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 시장규모도 확대되는 추세임 그런데 구독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정기적인 자동결제의 방식으로 이용요금을 부과하고 있고, 이러한 결제방식은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음. 즉, 소비자는 최초 계약 시 정기적인 자동결제를 포함한 약관에 동의하고 구독서비스에 가입하나, 해당 구독서비스 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입한 사실 자체를 잊거나 결제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 등으로 계속적인 이용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해지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임 이에 이용요금을 이용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요금의 결제일 7일 전까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이 결제된다는 사실 등을 고지하고 약관으로 그러한 의무를 면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2 신설)	2021-06-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1인)」 정보검색서비스제공자는 정보검색결과를 공정하게 제공하고, 광고와 정보검색결과를 구별하여 제공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 현행법에는 이를 규제할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보검색서비스제공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보검색서비스제공자가 정보검색결과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검색결과를 도출하는 기본원칙을 공개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정보검색결과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구별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인터넷산업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4호 및 제44조의11 신설 등)	2021-06-17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환경노동 위원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거나 재활용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재활용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시행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제도에 따라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며 폐차를 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차 이후 발생하는 재활용 사업이 현행 법상 재활용산업으로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하여 재활용촉진 지원 정책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과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현행법상 재활용산업에 포함시켜 현행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시키고,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1호)	2021-06-15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포장재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포장재의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기준에는 포장재의 제조방식까지 포함되지 않아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강력한 접착제 등을 사용하여 부착물을 붙여 포장재를 제조하는 경우 포장재의 부착물을 분리하기가 쉽지 않아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활용이 용이한 제조방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그 기준에 따라 포장재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포장재 재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제9조의3 등)	2021-06-17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환경노동 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최근 연이어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지금 정부의 산업안전감독관 인력만으로는 전국의 수많은 사업장에서의 산재사망과 재해를 관리 감독하기 힘든 것이 엄연한 현실임 물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도입되어 산업안전에 있어서 사업주와 관리자, 그리고 근로자들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지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이 의무 사항이 아니고, 활동보장에 대한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이어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상태에 놓여 있음 이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에서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을 의무화하고, 이들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면제 또는 수당 등의 지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172조 및 제175조)	2021-06-18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2월 8일에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의 노동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무 중 고객으로부터 욕설 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93%에 달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객응대근로자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한 경우 폭언등을 한 고객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고객응대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여 고객응대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및 제169조의2 신설)	2021-06-18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국토교통 위원회	• 「<u>건설안전특별법안(김교홍의원 등 36인)</u>」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발주자, 시공자 등 상대적으로 권한이 큰 주체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에도, 실제 사고로 인한 책임은 상대적으로 권한이 작은 하수급 시공자와 건설종사자들이 지는 경향이 있음 이에, 발주자는 적절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하며 시공자가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건설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며, 사고손실 대가가 예방비용 보다 크다는 인식을 확산하여 안전관리에 우선적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특수성에 맞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건설사고 위험성을 낮추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발주자는 설계·시공·감리자가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 공사는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이 적절한지 인허가기관의 장 등에게 검토를 받아야 함(안 제8조) ②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시공자는 해당 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하며, 다수 공종의 건설사업자가 사용하는 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하여야 하고, 위험 작업이 현장에서 동시 추진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함(안 제15조) ③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 안전관리계획서 등에 명기된 안전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공사를 중지하도록 하는 한편, 시공자가 공사 중지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17조) ④ 건설사업자는 소속 근로자 등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발주자도 보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건설사업자의 사고 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산정하도록 함(안 제31조) ⑤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에게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부여하거나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함(안 제34조 및 제35조) ⑥ 발주·설계·시공·감리자가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9조)	2021-06-16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본회의	6/22(화)	대정부질문(정치·외교·통일·안보)	
	6/23(수)	대정부질문(경제)	
	6/24(목)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	
상임위원회	아래 별첨1 참조		
국회사무처	6/25(금)	「해의의회 포커스」 제44호 발간	
국회도서관	6/22(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63호 발간 -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의 언론 간행물 대가지급에 대한 입법동향	
	6/22(화) 15:00	제17차 「AI와 국회포럼」 개최 - 인공지능과 도시교통혁명	온라인
예산정책처	주중	「2021 대한민국 조세」 발간 - 조세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세의 일반론 및 현행 조세 체계에 관한 해설서를 발간	
	주중	「2021 조세 수첩」 발간 - 조세제도 및 통계 현황 등에 관한 최신 정보 제공	
	주중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6월호 발간 - 현안: 주요국의 코로나19 이후 재정지출과 최근 경제성장률 추이 - 이슈: 자산가격 변동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 국제 비교	
입법조사처	6/22(화) 10:00	「전문가 간담회」 - 폐기물종료제도와 재활용환경성평가 비교를 통한 순환제도 개선방안 마련	
미래연구원	6/24(목) 10:00	국가 중장기 아젠더위원회 제9차 총괄반 개최 - 구조적 변화 전망을 통한 기회/위협 요인 및 핵심 집중과제 발제 - 사회조사 기반 국민의 요구, 미래비전 방향 등 연구 진행사항 공유	

[별첨1] 제388회국회(6월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법사위	6/21(월) 10:00	법안심사1소위	법안심사
	6/22(화) 10:00	법안심사1소위	법안심사
	6/24(목) 10:00	법안심사2소위	법안심사
	6/25(금) 10:00	전체회의	법안심사
정무위	6/22(화) 10:00	전체회의	법안상정 등
	6/23(수) 10:00	법안심사1소위	법안심사
기재위	6/22(화) 10:00	전체회의	법안상정
	6/23(수) 10:00	조세소위	법안심사
	6/24(목) 10:00	경제재정소위	법안심사
	6/24(목) 10:00	조세소위	법안심사
	6/25(금) 10:00	전체회의	법안심사
과방위	6/23(수) 10:00	과학기술원자력 법안심사소위	법안심사
외통위	6/22(화) 09:30	전체회의	법안상정, 현안보고 등
	6/23(수) 09:30	법안심사소위	법안심사
	6/25(금) 10:00	전체회의	법안의결
행안위	6/22(화) 10:00	법안심사1소위	법안심사
	6/22(화) 11:00	전체회의	법안의결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문체위	6/21(월) 14:00	전체회의	법안상정, 현안보고 등
	6/22(화) 10:00	전체회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6/23(수) 10:00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	법안심사
	6/24(목) 10:00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	법안심사
농해수위	6/22(화) 10:00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	법안심사
	6/23(수) 10:00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	법안심사
	6/24(목) 13:30	전체회의	법안의결 등
복지위	6/23(수) 09:00	법안심사1소위	법안심사
환노위	6/22(화) 09:00	전체회의	법안상정 등
	6/22(화) 10:00	법안심사1소위	법안심사

※ 위원회 일정은 추후 변동 가능합니다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6/21(월) 14:00	글로벌 전기차 입적단지 조성 방안 토론회	양기대, 문정복, 임오경 의원실	여의도 이룸센터
6/21(월) 14:00	개정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른 뉴스페이스시대, 국내 우주산업 육성방안	조승래, 기동민, 박재호 의원실	박재호TV 생중계
6/23(수) 07:00	창간 21주년 상생과통일포럼 초청특강	설훈, 정진석 의원실, 상생과통일포럼 외	글래드호텔 블룸홀
6/24(목) 10:00	스포츠클럽육성법 제정 기념 국회 온라인토론회 :한국형 스포츠클럽,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안민석, 최강욱 의원실, 국회교육문화포럼	안민석TV 실시간
6/24(목) 16:00	국회물포럼 제14회 대토론회 :통합물관리 시대, 탄소중립 어떻게 해야하나?	변재일 의원실, (사)국회물포럼	온라인 ZOOM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6/14(월) 10:00	공공의료포럼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 :한국 공공의료의 대전환 : 모두에게 필요한 공공의료 확충방안	남인순, 박찬대, 배진교, 서동용 의원실 외	이룸센터 이룸홀
6/15(화) 10:00	(긴급좌담회) 대우중공업-대우조선 기업결합 왜 문제인가?	민형배, 이정문, 서일준, 배진교 의원실 외	이룸센터 이룸홀
6/15(화) 14:30	녹색성장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입법토론회	임이자 의원실	유튜브 생중계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을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 | | |
|---|----------------|-----------------------|
| •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 T. 02-316-4630 | E. dybaek@shinkim.com |
|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선임외국변호사 | T. 02-316-4212 | E. hpak@shinkim.com |
| •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 T. 02-316-4432 | E. sbkim@shinkim.com |
| • 홍정아 (Claudia Hong) 선임외국변호사 | T. 02-316-4487 | E. cahong@shinkim.com |
| • 방세희 소속변호사 | T. 02-316-1773 | E. shbang@shinkim.com |
| • 노지은 소속변호사 | T. 02-316-2573 | E. jeroh@shinkim.com |
| • 서예지 소속변호사 | T. 02-316-1787 | E. yjiseo@shinkim.com |
| • 문응필 소속변호사 | T. 02-316-4047 | E. epmoon@shinkim.com |
| • 최유리 소속변호사 | T. 02-316-1748 | E. yrchoe@shinkim.com |
| • 성재열 소속변호사 | T. 02-316-1777 | E. jysung@shinkim.com |
| • 조성환 소속변호사 | T. 02-316-2596 | E. suhcho@shinkim.com |
| • 박희훈 소속변호사 | T. 02-316-7917 | E. hhpark@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